
제18회 KISTEP 수요포럼

주요 내용

2015. 2


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Korea Institute of S&T Evaluation and Planning

1. 개요

□ 목적

- 정부3.0과 과학기술 정보공개 관련 핵심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R&D관련 정보 공개의 방향성 모색

□ 일시 : 2015년 2월 4일(수) 10:30~12:00

□ 장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

□ 주제 : 「정부 3.0과 과학기술정보 공개의 딜레마」

□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비 고
10:30~10:35 (5')	• 개회사	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0:35~10:40 (5')	• 발표자 및 패널 소개	사회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40~11:10 (30')	• 주제 발표	‘정부3.0과 과학기술정보 공개의 딜레마’ (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센터장)
11:10~11:40 (30')	• 지정 토론	좌장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김종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범 경희대학교 겸임교수(김앤장 자문위원)
11:40~12:00 (20')	• 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• 폐회	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
2. 주제 발표 주요 내용

□ 주제 : 정부3.0과 과학기술정보 공개의 딜레마
(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센터장)

□ 정부3.0 추진과 과학기술정보

○ 정부3.0 이란

-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,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
- 공개와 개방의 차이

구분	개방(제공)	공개
소관법률	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'13년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'98년 시행)
목적	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, 국민편의 향상	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
범주	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	전자적/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
제공형태	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	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

○ 과학기술정보(데이터)의 정의

- (생성단계 측면) 국가연구개발 과정 또는 결과로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
- (단계별 측면) 자료조사, 측정/관측, 실험, 결과공유, 통계, 권리/지원
- (정보형태 측면) 부호, 수치, 문자, 음성, 음향, 영상

□ 과학기술정보 공개(개방) 현황

○ 추진 방향

-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성·취득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

○ 개방 현황('14년 12월 현재)

- 공공데이터포털에 705개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셋, 오픈API 등 12,500여종이 개방되었으며 여기에 과학기술분야 540여종 포함



[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 공개(개방) 사례]

□ 과학기술정보 활용

○ 과학기술 정책 수립, 정보 분석 및 협업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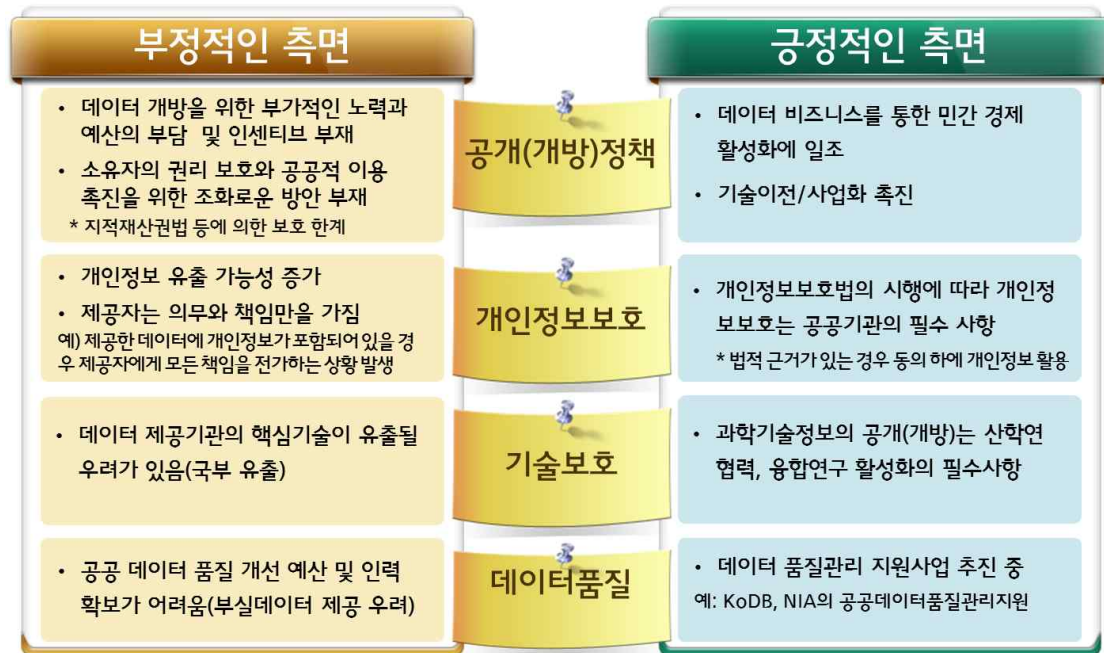
-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, 신규사업/R&D 기획 등에 활용
- 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예측, 정보공유 및 디지털 협업으로 과학기술정보 품질 제고

○ 국민·경제 수요 대응 및 일자리 창출

- 생활·문화·지식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공공기관 보유 원천데이터에 대한 개방요구 대응
- 국민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, 1인·벤처·중소기업 창업 등에 기여
- 과학기술정보 사업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

□ 과학기술정보 공개(개방) 이슈

- 과학기술정보 공개(개방) 관련 주요 이슈를 정책, 정보보호, 기술보호, 데이터 품질 관점에서 부정적 측면, 긍정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



□ 제언

- 무조건적 공개·개방이 아니라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정의할 필요
- 과학기술정보 공개(개방)에 따르는 혼란과 우려를 동시에 고민할 필요
- 법·제도적인 부분의 명확화 필요

3. 패널토론 주요 내용

【 김종범 교수, 국민대학교 】

□ 과학기술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개해야 함

- 수요자 중심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정보를 파악하고 공개에 따른 장애요인과 긍정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
-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 공개가 ‘공개할 위한 공개’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

- 과학기술정보 공개 관련 법·제도화를 통해 전달기제(delivery system) 마련 필요
 - 과학기술정보의 개별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,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자와 수혜자를 파악하고 이들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전달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
- 과학기술정보, 공개할 것은 공개하되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함
 - 국방연구 및 군수검용 연구 등 대외비가 민감한 영역 못지않게 전기전자, 화학 등 산업 연구도 정보공개에 민감함을 고려할 필요
 - ※ 국가기밀 보호와 기업정보 공개에 따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

【 이창범 교수, 경희대학교 】

- 공공정보 공개 관련 법·제도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함
 -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데에는 많은 법적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개인정보 이슈로, 조화로운 정보 활용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
 - ※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정보의 개방이나 공유보다는 보호가 우선
 - 다수의 관련법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체법적 원칙에 대한 수정 없이 개방 및 공개를 위한 절차,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
- 공개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고민과 노력 필요
 - 공개자료에 비식별화 수준을 요구할 경우 이런 정보는 활용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비식별화 수준을 요구
 - ※ 해외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비식별화가 아니라 익명화 정도만을 충족하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나 국내 현행법은 보다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여 추적성이 있으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고는 활용할 수 없음
 - 비식별화, 익명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/익명화 단계(수준), 제공 및 공개의 구분 등에 대한 고민과 검토 필요
 - ※ 데이터는 보관과 활용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, 우리나라의 경우 활용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많지 않지만 자료 보관 보안에 관한 인식은 매우 열악한 수준